

라) 기타 유의사항

- (1) 휴직자가 당초 휴직 시에는 A대학에서 ○○에 관한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허가 받은 후, 임용권자의 허락 없이 B대학으로 옮기거나 △△에 관한 학위취득을 하는 등의 행위는 당초 휴직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휴직사유의 소멸로 간주, 지체 없이 복직시켜야 함
- (2) 다만,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대학 또는 학위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
- (3) 당초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하고 유학 중 석사학위를 조기에 취득한 경우도 휴직 사유의 소멸로 봄. 따라서 휴직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박사과정을 계속 이수할 수는 없음
- (4) 유학휴직은 복직하여 본도의 교육기관에서 유학휴직기간과 같은 기간을 반드시 근무해야 함

5) 휴직신청서류

가) 휴직신청서: 소속, 직, 성명, 휴직사유, 휴직기간 등을 명시

나) 휴직사유 입증서류

- (1)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등록·입원 또는 입학증명서 등
(아포스티유 또는 재외공관확인)
- (2) 휴직자의 출·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출·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서류
- (3) 기타 경기도 교원 국외 자비유학, 연수·연구대상자 선정 기준에 명시한 제출서류

6) 복직절차

- 가)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(학위의 조기 취득 등)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(복직원 제출)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
- 나)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. 이 경우 복직발령일 전일까지는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5조의 휴직기간으로 봄

7) 기타

가)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

- (1) 경력평정: 50% 산입
- (2) 호봉승급: 호봉승급기간에 포함

나) 결원보충: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

다) 보수

- (1) 봉급: 50% 지급
- (2) 수당(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)
 - 정근수당: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 없이 전액 지급
 - 정근수당 가산금, 가족수당,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수당액의 50% 감액 지급
 - 기타 관리업무수당, 특수지근무수당, 특수업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함